

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. 11. 13 선고 2024가단468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 
절차이행]

---

## 전 문

원 고 A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1. 13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. 12. 28. 접수 제2648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 2. 무변론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장진영

별지